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화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17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221411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화(안 제 61조제6항 신설)	2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22141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11.
3. 회 부 일 : 2025.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함.

그런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차량 이동이 제한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지만 인근 주민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화(안 제61조제6항 신설)

개정안은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적은 표시를 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기 3일 전부터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까지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적은 표시를 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기 3일 전부터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사전에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현행	개정안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도로점용에 관한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u>

가. 검토의견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54조¹⁾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고,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및 별표³⁾에서는 사람들에게

1)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2)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법 제61조 제1항전단 및 영 제54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1조 제1항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54조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안내해야 할 구체적인 허가내용을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기간, 공사의 시행기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3 >

[별표3]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장소와 면적	
5. 점용의 기간	
6. 점용물의 구조	
7. 공사의 방법	
8. 공사 시행기간	
9. 도로의 복구방법	
10. 허가기관	
11. 허가연월일	
12. 점용자의 주소·성명	
13. 불편신고전화(○○○-○○○○)	
14. 그 밖의 사항	

이와 같이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공사기간 중에만 내걸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도 공사의 착공시점부터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공사내용

한다.

- ④영 제54조 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공사구간 및 기간 등의 내용을 공사에 착수하기 3일 전부터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의 내용을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게시하는 정보의 범위를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령에 따를 경우 이와 함께 도로의 종류, 점용물의 구조, 허가기관, 도로의 복구방법 등 공사와 관련된 폭넓은 정보(「도로법 시행규칙」 별표3)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게시하는 정보의 범위를 현행법령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 제61조제6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사전에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게시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사기간 중에도 허가내용 등에 대한 게시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허가내용 등을 사전에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법령과 같이 공사에 착공하는 날부터 게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개정안은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굴착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주민 불편 해소 및 갈등 예방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사전에 게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가 내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하는 도로점용허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개정하고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사전 안내에 관한 사항은 도로 점용에 따른 안전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³⁾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3) 「도로법」

-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3. 10. 24.>
-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사전에 공사내용을 게시하여, 도로굴착공사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다만 현재에도 시행령에서 굴착시 점용허가 내용의 게시의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게시의무·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허가내용 공고시기 변경은 「도로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82